

〈특 집〉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

鄭宗燮**

I.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무엇인가?

법학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1995년경부터 논의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고,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과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미국의 제도라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어 대륙법(civil law)계의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을 한 논란의 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law school이라고 하면 논의가 왜곡될까 하여 이를 미국의 law school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law school을 잘 모르거나 생소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로스쿨이라는 용어는 가능한한 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의 law school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는 점에서도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먼저 지적해둘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대륙법계라고 단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법시스템상 적합한지 의문이거니와, 대륙법계와 영미법(common law)계가 법학교육의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가사 영미법계라고 하더라도 law school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륙법계라고 하더라도 law school의 방식을 가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 가운데는 일본의 경우가 우리와 같이 대륙법계인데, 이런 일본도 law school로 바꾸지 않고 4

* 이 글은 2004년 5월 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副教授

년제 법과대학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왜 일본으로부터 수용한 대륙법체제를 가진 우리가 영미법계인 미국식 law school로 바꾸어야 하는가 하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사법개혁을 하면서 미국식 law school을 변형하여 ‘일본식 로스쿨’제도(‘법과대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음)를 채택하자, 이런 주장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쑥 들어가고, 법학교육제도를 두고 대륙법계니 영미법계니 하는 식의 논의는 식어 버렸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동안 미국의 law school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 넓어졌고, law school이라고 말해도 이제는 낙인을 찍어 공격하는 원시적 수준은 극복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다소 이성적인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국의 law school제도에 비추어 말하는 것이 보다 논의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법학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의 핵심적 내용과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핵심적 내용과 본질》

- 전문직업(profession)인 법률가를 교육·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 다양한 전공의 대학 4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법학교육을 시킨다.
- 기본적으로 미국식 law school제도의 도입이다.
- 법학의 학술학위(법학석사, 법학Ph. D.)과정을 둔다(미국 law school과 다른 점).
- 교육성과와 여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한다

《법률가양성의 전체체계상 파생적 구조》

- 법률가의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법률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한다.
- 법률가자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 법률가자격시험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판사나 검사임용시험이 아니고,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된다.
- 연간 배출 인원수는 현재보다 증가하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에 비례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 7-80%는 법률가자격시험에 통과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는 비싸게 된다(다만, 현재 사법시험구조의 사회적 총

- 비용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현행 사법연수원 시스템은 해체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각기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에서의 직역연수로 전환된다.
 - 판사와 검사는 법원, 검찰이 마련한 독자적인 전형방법에 의한 임용제도에 따라 따로 임용된다(법조일원화 방식, 현행과 같은 사시합격자 바로 임용 등 병행 -2 tracks).
 - 현재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는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대량 배출되는 사시출신자로 충원하되, 특수한 업무영역에는 개방형 특채로 수시로 인력을 충원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 중의 오류들

약 10여 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 가운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논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다른 대안제시가 개혁과 반개혁의 판단기준인 양 오해되기도 하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의 어느 한편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때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신자유주의 교육이라고 색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첫째,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개혁하는 이상 이는 개혁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만이 법학교육개혁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교육개혁의 방안이라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보수냐 진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욱 아니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의를 보수-진보의 논의와는 분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law school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되어온 것이어서 신자유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넷째, 법학교육시스템의 선택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논의의 장에 있어서 오해는 『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주된 것인데, 이러한 오해들이나 잘못된 시각을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계도 왜곡되거나 졸속설립과 그 실행에서 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새 시스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수 충원, 교육여건 등에 관하여 정확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나라에서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이라는 일괄적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대학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

-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입시의 경쟁은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이 있는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비용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그 과열의 양상이 우리만큼 심하지 않은 것은 우수한 대학이 매우 많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넓다는 점과 시험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인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열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법과대학은 전문직업인 법률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당연히 치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law school과 medical school은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고,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입학하기도 어렵다. 또 전공 가운데 law school이나 medical school에 들어가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명문대학의 정치학과나 생물학과 등에서의 입학에서는 역시 경쟁이 심하고, 이 전공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

- 우리나라에서의 입시과열은 한정된 명문대학과 시험성적위주의 입시에서 비롯하는 것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대학의 수준 향상, 좋은 대학 많이 만들기, 대학의 입학기회 확충, 학생선발의 자율화 등에서 찾아야지 법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서 찾을 일은 아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 고등학교에서 법과대학을 들어가려는 경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는 입시에서의 경쟁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또 시기적으로 전문법학대학원의 입시 때까지 늦추어질 뿐이므로, 대학입시과열의 해소가 목적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그 수단으로 채택되는 『목적-수단』의 관계가 될 수는 없다.

2. 대학 학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

- 비법학 전공 학생이 법대강의를 수강함으로써 해당 학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과대학을 대학원 과정으로 올려 버리고, 학부생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면, 대학의 학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자고 하는 견해이다.

- 대학에 다니며, 법학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강제로 법학과목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법과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학부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과정에서의 법학과목은 학부에서 개설되어야 한다. 경제, 경영학 전공학생에게 경제관련 법, 세법 등에 관한 여러 법과목 개설, 사회과학 전공학생에게 헌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노동법 등에 관한 과목 개설, 자연과학 전공학생들에게 공학관련 법(생명공학과 법, 기술과 법, 특허법 등)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대학의 고시열풍의 현상은 법과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법률가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데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보게 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

- 이러한 시각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만들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내용과 교육방법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을 희박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형태와 내용이야 어찌되던 법학교육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만 올리면 된다는 식이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졸속전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졸속전환은 필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패를 초래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교육기관이라는 시각

-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중심교육이라는 오해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여전히 법학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교육기관이지 실무교육이 아니다. 법학은 실무와 괴리될 수 없기 때문에 법학교육에서도 법실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사법연수원과 같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가들이 주로 교육을 맡는 것도 아니다.

- 이러한 오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과 교수충원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더라도 판사를 위한 실무교육과 연수는 판사연수기관(지금의 사법연수원의 개편), 검사를 위한 실무교육과 연수는 검사연수기관(지금의 법무연수원의 개편), 변호사를 위한 실무교육과 연수는 변호사 연수프로그램(변호사 단체에서 연수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통하여 하게 된다.

4.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

- 현재 법학교육의 파행은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법시험만으로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현재 법과대학제도 하에서도 법과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사법시험의 문제방식을 법학교육과 연계하여 개선하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법학교육을 강화하면(6년제 방식이든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식이든) 법학교육 그 자체는 정상화된다.

- 법의 성실상 법률가에게 보다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화된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원보다는 대학 4년 과정을 졸업한 자원을 상대로 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현재 4년제 법과대학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전공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법학교육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보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5.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가의 배출 수를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시각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 약 7-80%는 법률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와 학생 정원의 크기에 따라 현재보다 연간 배출하는 법률가 수가 늘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인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부터 다량의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법률가 수를 확대하려면 현재의 제도에서 법과대학 이수자만 사법시험을 칠 수 있게 하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리면 된다.

- 현재는 연간 배출하는 법률가의 수(사시 합격자 수 즉 1,000명)만 늘려 놓았

을 뿐, 법학교육의 파행화는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수준미달의 법률가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심각한 상황). 이는 기존의 사법제도개혁의 조치가 우선 사시합격자 수만 늘리는 선에서 개혁의 요구를 막아보려고 한 미봉책으로 채택된 것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래된 폐단이다. 전체 시스템의 개혁을 도외시키고 순간적 미봉책이 어떤 문제들을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국면이다.

III.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철저한 전문가로서의 법률가 양성

법의 영역은 경제, 정치, 교육, 노동, 군사, 복지, 조세, 안보, 국제관계, 국제기구,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기술 등 공동체 및 국제질서에서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가라고 하면, 이러한 다양한 법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법률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법률가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특수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관이나 법원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지금과 같이 4년제 법과대학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졸업생을 상대로 법학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가를 양성해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법분야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를 상대로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하는 것이 강력한 대안이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지적 배경의 법률가 양성

법은 우리의 다양한 생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그림 1), 다양한 생활영역마다 존재하는 것(그림 2)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아닌 다양한 생활영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법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여 법률가들이 각기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추가하여 지식을 심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충분하지도 않으므로 진정한 법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림 1〉

경제	정치	행정	군사	국제관계	노동	교육	복지	법
----	----	----	----	------	----	----	----	---

〈그림 2〉

경제 관계법	정치 관계법	행정 관계법	군사 관계법	국제 관계법	노동 관계법	교육 관계법	복지 관계법
경제	정치	행정	군사	국제관계	노동	교육	복지

3.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법률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이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 것과 마찬가지다.

법률가가 변호사로 일하든, 검사로 일하든, 판사로 일하든, 행정부공무원으로 일하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각기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이다.

변호사도 이제는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없다(변호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아무 분야에나 개입하여 떠들어대는 것도 이 시대에는 이미 낡은 것이다). 경제만 하더라도 금융, 기업, 조세, 노동, 산업재해 등으로 변호사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화에 따라 각종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도 전문화되고 판사도 전문화되어 분화되고 있다. 가정법원사건, 특허법원사건, 행정법원사건, 군사법원사건, 조세사건, 노동사건, 소년사건, 국제분쟁, 기업사건, 해사사건, 항공법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방식에 따라 배출되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해당 분야전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이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당연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시스템상 우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실력있고 신뢰성이 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

를 받을 때, 현재 국민이 향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대학졸업후 성인에게 법률가로의 진로 선택 기회 부여

현재의 방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법률가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편입이나 전과의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전문가 양성체계를 포기하고 있다.

법률가로의 진로를 과연 고등학교 졸업후 한번의 대학입학시험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까. 법학이 본래 어른의 학문이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자원이게 가르쳐야 제대로 된 법률가가 배출될 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 다음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 법률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법률가로의 진로에 진입할 수 기회를 유연화하고 합리적이게 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어 법률가로의 진입 기회를 봉쇄하는 것과 고등학교 졸업후 다양한 공부를 한 후 또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법률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다 합리적인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단연 후자가 우월하다고 본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열해소나 대학학부교육의 정상화나 실무교육의 실시나 연간 법률가의 배출 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국가의 운영에서 철저한 전문가로서의 법률가를 원하느냐,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양성된 법률가를 원하느냐, 질이 높은 법률서비스를 원하느냐, 법률가로 나갈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 것이냐 하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논의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IV.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요건

1.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필수적 연계

-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은 전국의 91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법시험은 이러한 법학교육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분리되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학점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예정에 있지만, 법학교육의 방대함에 비추어 볼 때, 35학점으로 법학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시학원에서의 학점취득도 이러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2003년 7월 법과대학교육의 강화로 법학교육개혁을 단행한 독일의 시각에서 보면,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한 넌센스에 해당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률가의 양성과 배출이 법학교육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법학교육은 여전히 파행화된다.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사법시험(법률가자격시험의 성격)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로스쿨제 개혁에서는 이 점을 제도화하였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어 과도기적으로 기존의 응시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2. 엄격한 설립인가 기준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성공하려면, 그에서 기대하는 ‘양질의 법률가의 양성’, ‘정상적인 법학교육’, ‘시대적 수요를 담아내는 심도 있는 교육’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에 이 시대에 요구되는 법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탄탄한 규모(입학정원 100-300명), 전문법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여건, 학생과 교수의 적정한 비율(10:1), 법현실의 수요를 담아내는 다양하고 심화된 교과 내용,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재, 이를 충분히 담당할 역량있는 교수 충원(학문경력 교수, 실무경력 교수, 외국인 교수, 전임 교수, 파트타임 교수, 객원교수 등 다양한 교수 충원 방식), 법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 legal clinic)이 필수적인 설립 기준으로 요구된다.

- 이와 같이 설립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설정되

어야 하고, 이의 집행은 엄격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의 법과대학의 교육과 비교하여 교과과정에서 획기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에서 4년 동안 이수한 전공을 고려하여, 각 개의 분과학문과 법학이 결합한 교과과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설치되어야 한다(법과 경제, 법과 기술, 법과 생명과학, 법과 스포츠, 법과 정치, 법과 사회, 법과 정책, 법과 예술, 법과 엔터테인먼트, 법과 문화 등).

- 필수 교과
- 다양한 선택 교과
- 법률가 윤리 교육 강화
- 실습교육(legal clinic, 모의재판, 로펌 또는 사법기관 등 internship 등)

4. 강도 높은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대학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상대로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것이 되어야 한다.

- 법학교육에서는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많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수요(국내적 수요와 범지구적(global)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과목도 많이 개설되므로 이를 3년 동안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강도 높은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를 위해서는 교수대 학생의 비율이 그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교육을 내실 있고 효과적이도록 하는 지원인력(예: 조교, 사서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방법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교재나 교육자료들도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5. 학생 선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 보장

- 학생 선발은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국공통의

적성시험(예: 미국의 LSAT)이 실시되어야 한다.

- 이러한 시험 성적과 함께 대학 학부에서의 성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 학부의 교육도 충실하게 된다. 학부성적을 고려함에 있어 따라오는 각 대학간의 우열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준에 따라 고려한다(통계에 의한 가중치 부여).

- 이러한 점 이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서 고려할 요소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V.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방식에서의 선택가능한 대안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방식

- 기존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 單設大學院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식
- 대학, 각 변호사회, 기업, 대형 로펌(독자적 또는 국내 로펌과 외국로펌의 제휴), 외국 law school과 제휴 기관 등이 설립하는 방식.
- 단설대학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 특허법학대학원

2.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아래의 3개 모델중 1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유형 항목	모델 1	모델 2	모델 3
law school (graduate)	×	0	0
undergraduate	법과대학, 법학부	× 법학과목만 개설	법과대학, 법학부 존치
특징	기존 4년제 교육유지	미국형	전환기 대응형
사법시험 응시자격	· 응시자격 없음 · 기존 법대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도기 동안만 경과규정을 정하여 인정	law school 졸업자	law school 졸업자
비고		19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안	· 서울법대 합의안 (학부규모는 law school보다 작게 유지) · 일본의 법과대학원 (학부규모가 law school보다 큰 형태를 유지)

모델 1: 4년제 법과대학만 유지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 이러한 4년제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채택되더라도 필요하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민주 시민으로 활동하거나 일반적 직업을 수행하는데도 필요하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대학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 우리 사회에서 법률전문가로 진출하지 않으면서 법지식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한다.
- 학부과정의 4년제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의 졸업자에게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에 입학하였거나 졸업한 사람에게는 과도기적으로 인정된다.
-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모델 2: undergraduate(법학강좌 개설)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undergraduate에 설치했던 종래의 4년제 법과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형태이다.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에서는 재정사정상 이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더라도 학부에서 배출되는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공학, 자연과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전공자들을 위하여 상법, 헌법, 특허법, 계약법, 노동법, 경제법 등 현실의 수요에 응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강좌(program)를 임의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 다른 전공자에게 필요한 법학관련 강좌만 개설되는 것뿐이다. 일반적인 법학 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가라는 전문직으로 진출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법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학이 제공하여야 하므로 대학원 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부에서 이러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러한 것은 대학간에 학점교류제를 시행하든지 대학이 독자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든지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정하면 된다.

- 학부의 법학프로그램의 개설은 법학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자기 전공과 관련하여 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공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강좌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부의 강좌에 설치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강의할 수 있을 뿐이다(이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부에 법학관련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담당할 교수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교수는 계약교수,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제 교수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다).

모델 3: undergraduate(법학전공과정 개설)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undergraduate에 4년제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를 존치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이 주된 것이고, 학부의 과정은 이보다 적은 규모의 것으로 존재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성공할지에 대하여 확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단 기존의 학사과정의 4년제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하여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면 법학전공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전략적 방안으로도 채택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예상과 같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4+2(4년제 학부과정의 법학교육 + 2년제 법률대학원)』 시스템으로 법학교육의 개혁이 이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에 있어서, 학부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는 law school과 동일한 규모를 가지거나 보다 큰 규모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소기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학부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보다 작아야 하고, 그 규모는 각 대학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경우 학부에서는 법학전공은 있지만, 과목에서 다소 조정이 따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법과대학의 교수는 기능적으로 분리된다.

- 4년의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